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발제자료집

2014.12.10.
세월호참사 국민대책위원회
존엄과 안전위원회

목차

I. 발제	p.03
“ 달라져야 한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운동	
II.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이 필요한 이유	p.14
III.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을 제안하며	p.19
IV. 존엄과 안전을 위한 인권선언 제안	p.21

대회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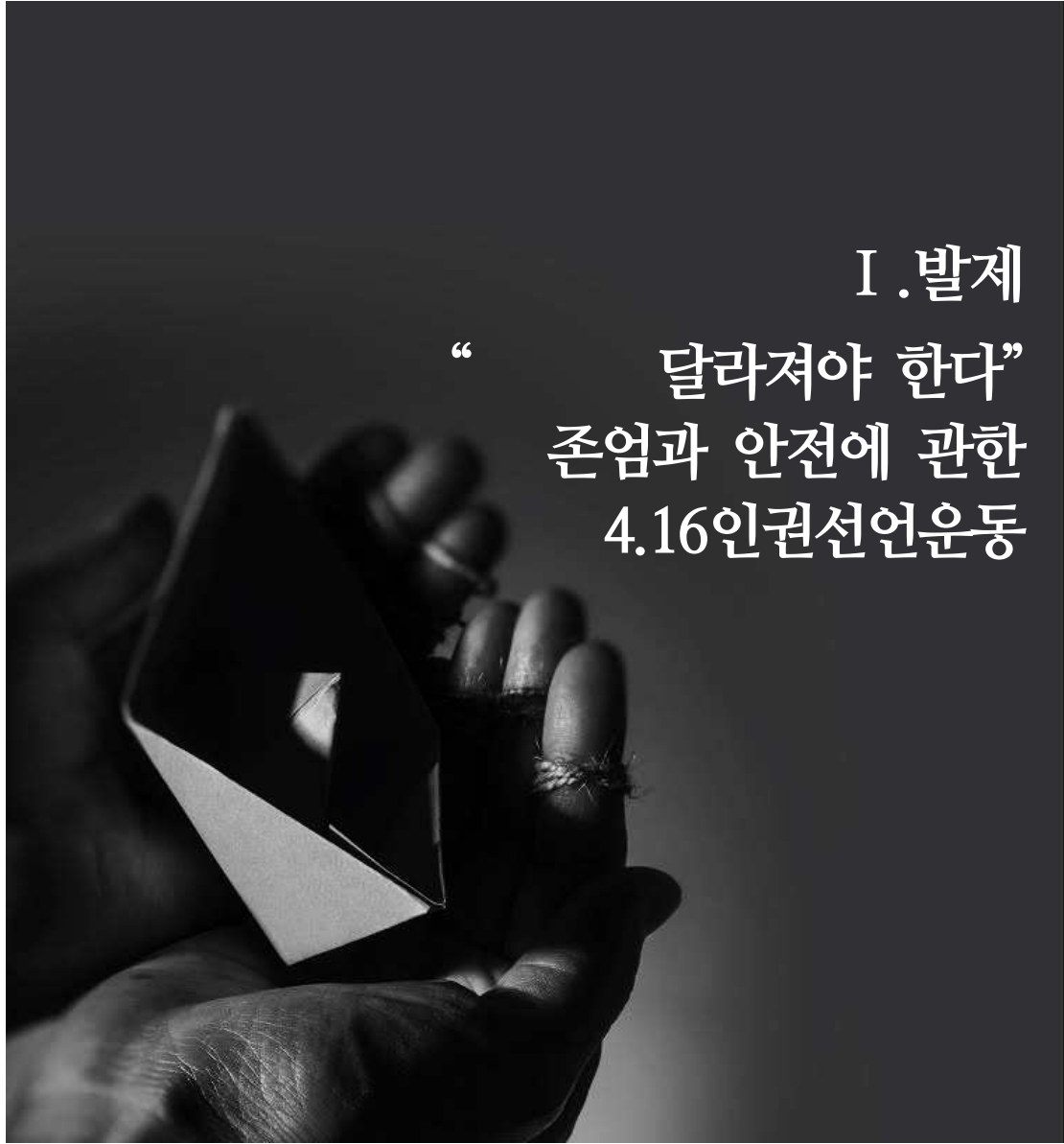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 사회 : 이호중 / 인사말 : 김성실(동혁 엄마, 세월호 가족대책위)

1부_ 우리는 제안한다

박은희 (예은 엄마, 세월호 가족대책위)
고석 (씨랜드 참사 유가족, 재난안전가족협의회)
한혜경 (삼성반도체 피해노동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박진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2부_ 우리는 행동한다

문화예술로 행동하자 _임창재 (문화예술인 행동)
진실을 밝히자 _이재근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알 권리를 실현하자 _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반올림)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자 _전수경 (노동건강연대)
위험한 작업을 멈추자 _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팽목항을 함께 지키자 _이원호 (기다림과 진실의 버스)
4.16 인권선언 종합계획 _미류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I . 발제

“ 달라져야 한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운동

1_ 그들의 경험이 보내는 위험신호

“1층 콘크리트 건물에 2-3층 컨테이너 쌓아서 만들었고 소방과 전기가 엉망이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축축사로도 활용하면 안 되는 건물이라고.” -씨랜드 희생자 유가족

“산사태가 난 곳은 이미 물길 아래고 이전에 유사한 사고가 두 번이나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민박집 허가를 내준 겁니다. 산사태가 일어날 자연 여건이 충분한 곳이었어요.” -춘천 산사태 희생자 유가족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 지키는데 급급하고 흠이 안 나게 하려고만 했어요. 선생님들을 용서하고 돌려보냈는데 증언을 해달라고 하니깐 자기가 일개 선생이라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 게 유족들의 불리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태안 해병대 캠프 희생자 유가족

그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일러 주었다. 고통스러운 이름, 유가족이라 불리게 된 이들은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재난가족안전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가 더 열심히 싸울 것을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 치열하게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웠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전 참사와 재난이 일러주었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면, 오늘 같은 불행이 쌓일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희생자들의 위험 신호에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되새기고 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의 약속 없는 세월호 대책은 또 다른 참사를 향한 초대장이 될지 모른다. 참사이후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은 이러한 우려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세월호 참사조차 우리 사회 위험을 알리는 하인리히 법칙¹⁾의 신호일 수 있다. 더 큰 재앙과 참사를 막기 위해 ‘지금 달라져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이다.

1)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하인리히 법칙은 1:29:300법칙이라고도 부른다.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것이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다시 말하면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면밀히 살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 대형사고나 실패를 방지할 수 있지만,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변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하인리히 법칙은 노동현장에서의 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나 재난, 또는 사회적·경제적·개인적 위기나 실패와 관련된 법칙으로 확장되어 해석되고 있다. -위키백과 ‘하인리히의 법칙’

2_ 4.16인권선언운동의 목적

4.16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 어떻게?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거대한 여객선의 침몰에서부터 방치된 인명 구조 작업, 언론의 행태, 정치권의 입장과 태도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모두가 한결같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한국 사회는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존중할 줄 아는 사회가 아니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월호참사 이후 다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범국민적인 열망은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존중하겠다는 선언을 통해 사회적 약속이 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이 세계 각국의 헌법의 기준이 되고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 목록을 인식시켜왔듯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별법과 진상규명을 위한 대중적 의지 실현은 함께 출발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특별법 제정은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선이기도 하다. 특별법 제정이 한국 사회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밝히려는 진실이 무엇이며 그 안에 담긴 미래는 무엇인지 알리며 대중적 힘을 모아가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럴 때 특별법이 국회에서의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에 그치지 않고 대중적 의지를 실현해나가는 출발선이 될 수 있다. 특별법과 더불어 존엄과 안전을 추구해가는 사회 운동이 만들어져야 한다.

약속하고 선언하는 과정이 존엄과 안전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안전, 이와 같은 가치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는 가치를 되뇌는 것으로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해를 보며 아프게 깨달아야 했던 경험을 토대로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를 약속하고 선언하는 과정은 법과 제도, 문화, 삶의 기준 등 광범위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선언이 운동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인권선언을 만드는 과정이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 안전한 사회는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참사와 재난을 막기 위한 약속과 기억을 세계인들과 나눈다

2013년 4월 방글라데시 라나 플라자(Rana Plaza) 붕괴 사고로 1,129명이 사망했다. 참사 이후 ‘방글라데시 화재 및 건물 안전에 대한 협정’이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선언 또는 문서들은 분쟁 후 정의에 관한 시카고 원칙(The Chicago Principles on Post-Conflict Justice 2001-2008, 이하 <시카고 원칙>) 등이 있다. 이러한 문서들은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약속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16인권선언은 참사와 재난에 관한 종합적 인권선언이며 이후,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다. 4.16인권선언은 세계인들 속에 참사와 재난을 막기 위한 약속과 기억을 남길 것이다.

3_ 4.16인권선언의 내용

1) 안전할 권리는 인권이다

(1)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인권의 토대로부터, 안전은 인권이다. 생명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결코 ‘비용’과 ‘효율’로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선언운동은 생명과 존엄의 가치를 무시해온 현실의 문제들을 짚어내면서 국가 정책과 사회 운영에서 모든 것에 앞서는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우리나라 수준이 회사에서 영업기밀이라고 지정하면 그냥 가타부타 말이 없다. 진짜 영업기밀인지 판단하지 않는다. 알권리 자체가 보장이 안 되어 있다. 화학물질안전에 대한 정보를 주지시킬 의무가 있지만 그런 건 그림의 떡이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안 되는 것처럼... 노동자들도 자신의 권리라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가 자기 권리인지 자체를 이 사회가 가르쳐주지 않아 인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 벌어졌을 때...보호와 예방을 위해 인력을 늘리자 등 하기 시작하니까 기업은 그냥 건강문제가 아니라 경영권 위협한다고 생각하더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 지금까지 정부가 내세운 안전은 ‘재산’과 ‘영토’의 안전이었다. 그것은 오히려 인권을 제한하거나 이윤을 더욱 추구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였다. 인권선언운동은 안전을 둘러싼 세계관의 경합이기도 하다. 우리는 존엄과 생명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테러 예방’을 이유로 오는 9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안전을 총괄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가운데, 개막을 석달 앞두고도 안전사고 대비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큰 국제경기대회의 안전대책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안전의 전문가가 아닌 국정원장이 ‘테러 예방’을 이유로 안전 관련 총책임자 자리를 맡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²⁾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업무 미흡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해경의 연간 구조·구난 사업 예산이 4억6000여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

2) 고발뉴스 2014.06.23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07>

획재정위원회 세월호 현안보고에서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경의 전체 예산 1조1133억9300여만원 가운데 구조·구난 예산은 0.09%인 10억5300여만원이다.”³⁾

(3) 안전은 모두의 권리다. 국가가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것, 전문가나 기업에 위임하는 것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모든 노동자는 위험을 알 권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고 변화시킬 권리, 작업을 통제할 권리 등을 누려야 한다. 모든 시민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 기업의 활동에 대해 정보를 요구할 권리, 참여하여 감시하고 직접 행동할 권리 등을 누려야 한다. 위 권리들이 다른 인권을 침해하는 이유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산재상담을 해봤는데 한결같이 회사에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였다. 내가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 사용하는 물질을 화학물질이라고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캠페인을 진행한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했다면...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과 안전장치 미비에 대해 항의하고 신고했다면...승객을 포함하여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출항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뒤통이었지만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중지권 복원 투쟁을 제안한다.”⁴⁾ -**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학물질사고는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계속 증가추세이다...상황은 이러하는데 정부는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구미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재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평가법을 규제개혁대상으로 지목하였다.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규제완화의 뜻을 밝힌 것이다. 또한, 화학업체 지도점검을 1년에 4차례에서 1차례로 줄이고, 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범위는 사고가 난 현장으로 한정하며 화학물질 성분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세계의 끊임없는 요구에 호응하고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2) 구조와 회복의 권리는 인권이다

(1)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구조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것을 책임지는 주체이다. 또한 기업 등 관련 기관은 이를 조력할 의무가 있다. 국가와 시민은 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국

3) 뉴스원 2014.05.19

<http://news1.kr/articles/?1682252>

4) 오마이뉴스 14.05.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4971

가와 기업 등 권력에 대한 감시할 권리가 있다. 긴급한 구조와 구난, 구호는 모든 것에 앞서 진행되어야 한다. 비용 문제와 형식화된 보고체계, 상급에 대한 의견은 모두 구조보다 후순위다. 이를 앞세우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팽목항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구조되어 온다는 섬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전혀 그럴 의지가 없었어요. 가족들이 돈을 모아 민간어선을 빌렸지요. 민간어선 타고 갔더니...해경 배 두척만 보였습니다. 그것도 구조할 생각은 없고,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 근처를 빙빙 돌기만 하더라구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학생들은 차분하게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일부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다가도 ‘탈출 과정에서 승무원이나 해경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냐’라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⁵⁾ -**세월호 참사 생존학생**

“새벽 1~2시에 유치원생들을 깨워서 팬티 바람으로 수련원 건물을 빠져나왔을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 싶다.” -**씨랜드 참사 희생자 유가족**

(2) 국가와 기업은 권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존중하고, 위험을 줄여나가야 하며, 안전을 해치는 조건과 상황을 피해야 한다. 누군가의 안전이 위협당할 때 구조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모두의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실현할 의무가 있다. 재난과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그 시작이다. 책임에 따르는 실효적인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

“처벌도 공무원 징역 2년 집행유예이고 대법에서 대부분 무죄이다. 유치원 원장은 5-6년, 수련원 건물주도 마찬가지... 인솔교사는 1년 집행유예... 공무원은 대부분 무죄이거나 집행유예로 끝났다.” -**씨랜드 참사 희생자 유가족**

“책임범위가 없다. 누군가 이런 행위를 권장했으면 분명히 사고에 책임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태안 해병대 참사 희생자 유가족**

(3) 희생자들은 적절한 지원과 보상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뜻하지 않은 참사로 인해 자신들의 삶과 생활이 중단되는 상태에 빠진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사후 보상은 이러한 참사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위한 조치는 희생자들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5) 경향신문 2014.7.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82209265

“의사자가 뭔지도 몰랐는데 자신들이 해준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합의에는 ‘건의’라고 되어 있었다. 일곱가지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확실한 것은 국가보상금, 보험성격의 보상금 정도이다. 이것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 외에 특별 위로금 등은 말로만 하고 줄 수 없다고 한다. 공무원은 이 상황만 넘기면 된다는 태도이다.” -태안 해병대 참사 희생자 유가족

“시장실에서 유족들이 원하는 것 들어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오면 도장 찍어주시오 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합의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더라. 도장을 찍어도 소용이 없다.” -춘천 산사태 희생자 유가족

(4) 안전은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다. 가난하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인이거나 이주민이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거나 안전에 대한 정보가 불평등하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권리가 제한당하거나 권리 행사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이 역시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최근 사례만이 아니다. 2008년 4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2011년 이마트 탄현점 사내하청 노동자 질식사 등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도 사례들은 숭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련의 산재사고 피해자 대다수가 사내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진보정책연구원 노동분야 담당 연구원 박철우6)

“여수 보호소 참사가 발생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주노동자들이 참변을 당하는 대형참사가 일어나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이주노동자나 중국동포들은 사고를 당해도 내국인의 4분의 1정도 선에서 보상을 받는다. 3D업종이나 위험한 현장에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적으로 이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삼열 사무처장7)

(5) 참사이후 벌어지는 참사와 관련된 일들은 참사의 진행형을 말한다. 참사와 관련해 시신을 인양하거나 수습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이러한 원칙을 비용이나 관행 등을 이유로 방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번 사고 피해자는 72명이라고 했다. 어떤 근거냐고 했더니 국과수에서 그러더라고 했다. 그래서 국과수에 물었더니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다. 다시 시에 물어보면 얼버무렸다. 1300도 1500도 올라가면 DNA도 없어져서 시신을

6) 오마이뉴스 2014.11.02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048808

7) 기독교타임즈 2008.01.15.
<http://www.kmctime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25723>

못 찾을 수도 있다고 했다. 잘못하면 내 가족을 못 찾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정신이 버쩍 났다. 시는 DNA로 구분될 수 있는 사람만 인정하겠다고 했다.”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가족**

“사고 나자마자 지하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대중교통이니까 시신수습을 잘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린 이걸 믿고 잘만 처리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 물청소를 하더라.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었다. 왜 시신도 수습이 안 되었는데 청소하냐고 했더니 이런 저런 변명을 하면서 우리를 설득했고 우리는 또 넘어갔다.”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가족**

3) 진실을 요구할 권리는 인권이다

(1)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게 된 사람은 진실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재난과 사고가 발생한 배경과 원인 및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조사 및 수사와 기소를 요구할 권리,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을 누려야 한다. 누구도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혐오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일인시위 하는데 누가 나한테 침을 뱉었다. 10억이 넘는 돈을 받았으면서 뭘 돈 더 달라고 시위하냐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갔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인터넷 댓글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다음 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찾아왔다.” -**태안 해병대 참사 희생자 유가족**

“사고원인 밝히려고 위원회 만들자고 요청했는데, 우리 3인, 춘천시 3인으로 구성했다. 그런데 조사 시작도 못하고 끝났다. 예산이 1억 든다면서 2천만 원 이상은 안 된다고 해서 해체되었다. 결국 가족들이 조사팀을 만들어서 방공포진지나 예전사고 등을 조사했다.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유가족 중심으로 학생들과 같이 작업했다. 당일 경고 문자를 시에서 보냈는데 피하도록 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춘천 산사태 희생자 유가족**

“공문에 도장 찍었다고 그것이 지켜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불리하게 공무원이 위증도 했는데 나중에 증거물이 나오니까 결국 위증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죄인을 만들려고 한다.”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가족**

(2) 참사와 재해 이후 사후 대책을 수립할 때 정부와 기업 등 해당 기관은 희생자와 가족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참사의 진실에 접근하는 노력에 최대한 조력해야 한다.

“언론은 유가족들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다. 오히려 그럴듯한 장면만 만들려고 한다.”

유가족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춘천 산사태 희생자 유가족**

“특별조례작업을 했다. 자연재해라고 했지만 원인규명을 했고 책임도 인정을 받았다. 공적비도 산천초등학교에 세우고 인하대학교에 추모비도 세웠다. 추모위원회로 전환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2년째 추모제 때 백서발간을 했다. 우리가 해왔던 과정, 이후에 하려고 하는 바가 정리되어 있다. 공무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이후 사고에서는 상당히 참고가 될 것이다.” -**춘천 산사태 희생자 유가족**

“유가족들끼리 만나야 한다. 우리는 참사의 원인을 알고 있고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있다. 그러니 서로 만나서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태안 해병대 참사 희생자 유가족**

“이러한 사고가 있었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단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재난안전가족협의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씨랜드 참사 희생자 유가족**

4_ 4.16인권선언운동의 방향

1) 아래로부터의 선언

권리 주체가 스스로 권리를 선언할 때 인권은 사회적 힘을 갖는다. 인권선언 운동은 선언문이라는 결과 하나를 남기고 잊혀 질 수도 있다. 선언이 실질적 힘을 가지려면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마주한 민낯이 무엇이며 어떤 문제들이 있어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각자의 목소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운동은 하나의 법제도 제정하는 것을 넘어 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였다. 이와 같이 인권선언운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대중적인 의견 수렴을 시도할 것이다.

2) 운동과의 연계

선언은 추상적인 권리를 밝히지만 그것의 바탕은 운동의 구체적인 과제와 요구다. 존엄과 안전을 위해 이미 진행되어오던 운동들과 세월호 참사 이후 펼쳐지고 있는 운동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기존의 재난과 참사를 통해 만들어진 운동들, 현대 사회의 위험에 대응해온 운동들, SNS나 동네 모임 등을 통해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운동들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인권선언운동은 동네에서 위험 지도 그리기, 위험물질 정보공개 청구 행동, 탈핵운동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

3) 구체적 성과

선언은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또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법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권선언 운동을 통해 지방의회는 조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국회는 관련 법 등을 검토하고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5_ 4.16인권선언 추진계획

1) 4.16인권선언 추진대회

2014.12.10.	인권선언 추진대회
-------------	-----------

2) 4.16인권선언 초안발표

201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실태조사 프로젝트 진행 : 빼앗긴 권리 살피기 - 당사자 및 추진그룹 간담회 및 온라인행동 : 권리 목록 제안 받기 - 문헌 연구 및 초안 쟁점 팀 구성 : 권리 목록 구성하기 - 인권선언 전국 강연회 : 인권선언 추진 제안
201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인권선언 초안 작성 - 세월호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향한 논문 공모전 - 인권선언 제정 시민위원 304인 모집
20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선언 초안 발표 - 304인 시민위원 확정 및 전체 초별 토론 - 4.16 대안사회 포럼

3) 4.16인권선언 제정

2015.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선언 제정 동참 서명운동 시작 - 권역별 부문별 304회 토론간담회 진행 - 토론결과 취합 및 쟁점 버리는 집중토론회
2015.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4인 전체 2차 토론 - 가족대책위 총회 채택 추진
201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선언 대토론회 - 주요 의무주체인 기관들이 인권선언을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항의행동
201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선언 동참 행동계획 발표;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채택하는 동시에 각자의 행동선언 추진
2016.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제정

Ⅱ.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이 필요한 이유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던가를 기억해 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다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적인 기준’으로서 이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 -세계인권선언 전문 중

I. 세월호 참사는 총체적인 인권침해 사건이(기도 하)다.

1.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아직 기억은 완성될 수 없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의 배경과 원인, 의미와 과제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를 둘러싼 투쟁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우리는 봤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이 짓밟힌 경험들이다. 구조하지 않고 방치된 죽음,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웠던 권력, 죽음을 슬퍼하는 이들에 대한 모욕, 공감하고 연대하지 못하는 사회. 인간의 존엄이 짓밟힌 지점에서 다시 인간의 존엄을 세워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인권침해 사건으로만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인권침해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억울하거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부당하고 부정의한, 인간의 존엄을 훼손한 사건으로.

2.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마땅한 권리다. 세월호 참사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박탈된 사건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조에 대한 일차적 의무를 지는 정부는 아무도 구조하지 않았다. 오직 탈출하는 선장과 선원들만 경비정에 신고 현장으로부터 빠져나왔다.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감각(내버려두는 것이 권리 보장이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왜곡된 감각)은 이와 같은 사건을 인권침해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생명권은 살인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죽인 것과 죽게 내버려둔 것은 다르지 않다.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에 처했을 때,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자원들을 차단하고 철회한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3.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본 것은 여객선 침몰과 구조 실패만이 아니다. 피해자 가족을 포함해 모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언론의 오보, 가족이 질문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주장을 할 경로의 부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진압한 경찰의 행위, 노란 리본조차도 달지 못하게 하는 정부기

관의 명령 등이 더해지면서 고통과 분노는 더욱 깊어졌다. 그런데도 MBC는 언론의 자유라며 국정조사 특위에 불출석하고, 한편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모욕하는 혐오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상호불가분성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구성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꼭 짚어져야 할 문제들이다.

4.

모든 사람이 인권의 주체다. 세월호 참사는 희생자와 실종자의 가족, 또는 생존자들만 겪은 사건이 아니며, 그/녀들조차도 ‘피해자’로 뭉뚱그려질 수는 없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하다.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리 침해에 취약한 집단이 누구인지 살펴야 한다. 가난하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인이거나 이주민이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되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에 접근하기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 또한 구조작업에 참여한 사람,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사와 관련해 경험했던 것들을 인권의 시선으로 살펴야 한다.

II. 참사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의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5.

세계인권선언은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경험의 참혹함으로부터 성안되었다. 다시는 겪지 않아야 할 사건, 누구도 내몰리지 않아야 할 사건이라는 인류의 감각이 인간의 존엄을 선언했다. 인권 선언은 원칙으로서의 규범력을 가진다. 원칙의 내용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이끄는 ‘일관된 힘’이다. “원칙은 실질적 강제력이기보다는 ‘자명한 구속력’이다.”(〈인권의 대전환〉) 세월호 참사를 마주하는 한국사회 역시 이와 같은 고통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가 한국사회에 남긴 과제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경로일 뿐이다. 특별법에 갇히지 않는 대중의 의지를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선언의 내용은 구체적인 권리의 목록들로 확인되어야 한다.

6.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명 구조를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이 참사의 고통을 길고 깊게 만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과 사고의 현장에서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를 선언해야 한다.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모든 사람이 신속하고 유효한 구조를 받을 권리-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세월호 참사를 통해 처참하게 무너진 권리-조차도 우리에게선 선언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자신이 처하게 된 상황과 변화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권리 등을 포함해, 재난이나 사고에서의 구체적 경험으로부터 권리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는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자원활동가 포함)의 권리도 짚어져야 한다.

7.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게 된 사람은 자신과 그 가족의 운명에 대한 진실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진실을 밝히고 알 권리는 모든 사람의 권리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원인, 후속조치들에 관해 아는 것은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동시에 진실에 대한 권리는 그 자체로 중요하다. 대체로 언제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실을 왜

곡하거나 은폐하려는 경향과 의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실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는 동시에 여러 원칙들이 밝혀져야 한다. 독립성과 공공성이 확보된 조사활동, 피해자의 특별한 지위,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주장되는 모든 사람과 기관에 대한 조사 등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제시했던 원칙은 모든 재난이나 사고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8.

재난이나 사고는 대부분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하다. 모든 사람은 재난이나 사고를 피하기 위해 위험을 지목하고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안전대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올해 1월 청와대 신문고에는 이미 청해진해운의 위험에 대한 내부 고발이 있었다. 그러나 무시되었다.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기본적이며 필수적이다. 위험을 심화시키는 작업을 멈추고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와 시민 모두 각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안전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등에 참여하고 감시하고 직접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통제나 감시, 전문가의 권위 등은 권리에 뒤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권리를 선언해야 한다.

III. 인권의 시선으로 책임을 밝혀야 한다

9.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고 실현되기 위해서 사회의 각 행위 주체들은 그에 따른 의무 혹은 책임을 가진다. 이때의 책임은 법적 책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존중하고, 위험을 줄여나가며, 안전을 해치는 조건과 상황을 막아야 할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 누군가의 안전이 위협당할 때 구조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모두의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모두가 책임지는 것-예를 들어, “국민 의식 변화의 계기”-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며,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예를 들어, “최종 책임”-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일 뿐이다.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주체의 역할과 권력에 부합하는 책임의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여러 행위들이 어떻게 참사의 원인을 구성하는지 규명해야 한다. 그래서 위험을 더욱 폭넓게 확산하고 심화시키는 주체가,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는 주체가, 위험에 대한 노출을 강요하는 주체가 더욱 크고 깊은 책임을 져야 한다.

10.

특히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밝히고 묻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위험의 생산, 분배, 관리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부와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처벌하기 어려운 현행법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권의 관점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밝히고 그에 합당한 실효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월호는 231회 운항 중 139회 과적이 있었고 이를 통해 청해진해운은 29억 5천만 원의 초과수익을 얻었다. 이러한 수익 중 상당 부분은 세모그룹의 수익으로 이전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감시와 관리의 역할을 맡았던 여러 기관과 정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위험을 방치하고 일부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각각의 행위자 개인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구조 과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해경 123정장이 구조 실패의 직접적 책

임을 지더라도 더욱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 관련 기관 및 행위자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

11.

사회구성원 개개인으로서 지는 책임도 있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도 목숨을 내걸고 구조할 의무를 질 수는 없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은 있다. 그런데 개개인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참사 초기 선장과 선원이 비정규직이라, 항해사가 여성이라 무책임하거나 무능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선장과 선원이 선장과 선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라서 무책임하다는 시선은 또 다른 차별을 낳고 그칠 수도 있다. 비정규직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어려운 구조를 문제 삼고 그것을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해경 개개인은 최선을 다해 구조해야 할 책임과 공무원으로서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어떤 해경 개인이든 최선을 다해 구조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 해경(기관, 정부)의 책임과 의무는 더욱 크다. 진실과 안전에 대한 권리도 마찬가지다. 진실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

12.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책임은 참사 이전에 가지고 있던 권한과 권력에 부합하도록 물어야 한다. 그러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한과 책임의 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구조 실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재난구조활동에 대한 정부의 권한이 중앙집중적으로 강화되는 것만이 안전대책인 것은 아니다.

IV. 인권을 선언하는 과정이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13.

지금까지 정부가 내세운 안전은 재산과 영토의 안전이었다. 예를 들어 해경은 구조보다도 경비와 조업 단속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왔고 그만큼 생명을 구하는 활동은 부차화되었다. 또한 기업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위험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가로막혀왔다. 경찰이 공공안전을 내세울 때에도 그것은 언제나 인권침해의 다른 이름이었다. 인권선언은 안전을 둘러싼 세계관의 경합이기도 하다. 우리는 존엄과 생명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14.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시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다. 각종 정책, 제도, 법 등이 맞물려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의 문제다.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는 마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세상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선언은 인식의 전환을 꾀하는 캠페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 변화를 도모하는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인권의 목록이 스스로 인권을 보장하거나 실현하지는 않는다. 권리는 우리 스스로 찾는 만큼 얻어지는 것이다.

15.

각자의 행동 과제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우리 삶에 닳을 내리도록 하는

방법이다. 진실을 탐문하고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안전을 생산하는 노동자로서, 안전을 위협당하는 노동자와 시민으로서, 참사를 함께 겪는 시민으로서, 훨씬 다양한 저마다의 위치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들이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행동의 위치와 관계가 인권선언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인권선언에 따라 실질적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조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국회의 법 등을 검토하고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16.

인권선언의 어떤 내용도 다른 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이유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도 권리의 행사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권리의 목록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변화를 안내하는 길잡이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 인권선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인권과의 관계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 세월호에 타고 있었다”는 말이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세월호 참사와 다른 여러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인권을 선언하는 과정은 연대할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Ⅲ.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을 제안하며

-박은희(세월호참사 희생자 유가족)

4.16 참사를 겪으며 가족들은 사람냄새가 나지 않는 말과 행동들 때문에 숨이 막혔었다. ‘사람이라면 도대체 이럴 수가 없어’ 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그런 행동들 앞에서 가족들은 돈보다 못한 대상으로 전락하여 이리저리 휘둘리고 인정사정없이 밟혀야만 했다. 416참사에 인권은 없었다.

구조가 최우선이었던 4월 16일 오후,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구조를 막았다. 그것이 지휘체계에 따른 것이건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이해득실을 따진 것이건 생명보다 우선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300명이 넘는 생명이 배안에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족과 국민으로 하여금 배가 침몰해가는 것을 지켜보게 한 정부의 태도는 잔인함을 넘어서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에서의 인권은 침몰하는 세월호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4월 16일 이후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안타까운 소식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온 이들도 많았지만 가족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와서 기다린 이들이 있었다. 바로 사복경찰들이다. 구조인력보다 더 많은 수의 사복경찰들이 미리 와있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정부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위로받고 도움 받아야 할 사람들을 오히려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치부하며 감시했다. 대화내용과 행동들을 끊임없이 녹음 또는 채증했고 통신내역도 사찰했다. 당연한 분노와 슬픔을 범죄행위처럼 몰고 갔다. 우리의 인권은 정부에 의해 이렇게 철저히 파괴당했다.

사복경찰 다음으로 많이 온 사람은 기자들을 비롯한 언론인들이다. 그들에게 가족들은 위로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기 보다 시청률과 구독률을 올리기 좋은 자극적 소재일 뿐이었다. 허락 없이 아무 때나 코앞까지 카메라를 경쟁적으로 들이밀었고 의도를 알 수 없는 질문으로 가족들을 곤란하게 했다. 언론 앞에서 가족들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벗겨졌으며 편집을 통해 왜곡 보도된 기사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댓글들을 불러왔다. 인권을 말하고 지켜야 할 언론이 오히려 인권을 먹잇감처럼 집어삼켜버렸다.

국회와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의 노숙을 하면서 가족들이 수없이 들은 말은 ‘집시법위반’이다. 이 단어를 로봇처럼 반복하는 경찰들을 보면서 만리장성보다 더 단단하게 가족들을 에워싸는 차벽과 경찰들을 보면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의사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이 나라에는 없구나하는 절망감을 느꼈다. 무엇보다 정치인과 청와대의 싸늘한 반응을 마주대하면서 더 이상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구나 아니 최소한 모든 국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부만 인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부당한 일이다.

남겨진 가족들이 겪은 인권의 상실은 먼저 간 304명이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이윤극대화라는 자본주의의 논리와 자본가의 무한탐욕에 밀려 안전을 빼앗겼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사용되어야하는 비용들이 기업과 이들과 결탁한 정치인과 이러한 관계를

눈감아주는 정부에게로 흘러들어갔다. 이러한 은밀한 뒷거래에 304명의 인권은 아무렇지도 않게 폐기되었다.

모든 생명이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혼자 살기에 급급했고 해경도 선원들 구하기에만 바빴다. 그들에게 배에 남은 304명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맞춰 구조를 기다리다가 창문 밖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심지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배안의 승객들이 느꼈을 분노와 좌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가루로 부서지는 느낌이다. 1년도 안된 지금 온갖 의혹이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고 어느 한사람 책임지지 않는데도 지겹다 그만해라 한다. 아홉 구의 시신을 품고 있는 배를 돈 문제를 들고 나오며 인양을 문제 삼는다. 한 인간의 존엄은 죽은 이후에도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짐승과 다르게 인간에게 장례문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시신수습은 한 생명이었던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권행사이다.

우리가 생명보다 돈을 귀하게 여길 때 생명은 사라지고 돈만 남을 것이다.

돈보다 생명이다.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고 모든 생명이다.

함께 살아남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이제는 생명에 대한 가치와 보호를 위해 인권과 안전을 외쳐야 한다.

IV. 존엄과 안전을 위한 인권선언 제안

-재난가족안전협의회

1. 참사를 당하고 우리 유족들은 인권도 침해당했다.

- 참사를 당한 우리 가족은 돈보다 못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이란 자연재해와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재산에 대한 복구 정도만 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 유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예방 소홀, 관리 부재로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유족들이 직접 뛰어다니며 밝혀내야 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으로 하자고만 합니다. 졸지에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몇 년씩 고통을 이어가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책임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 우리에게서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참사 원인에 대한 규명과 책임자 색출은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과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책임주체가 국가와 지자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보에 대한 접근도 어려운 편입니다.
-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는 게 맞습니까? 참사의 책임주체를 밝혀냈다고 해도 보상 문제가 매듭 지어지면 모든 것은 없던 일로 됩니다. 경찰과 사법부도 기업이나 공무원들에 대해 우호적이었습니다.
- 유족들은 분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면 죽은 사람을 갖고 돈 더 받으려고 투쟁한다고 해당 지자체장이 유족들에게 대놓고 모멸감을 줍니다. 유족들을 몰상식한 인간으로 몰아갔습니다. 분노하고 슬퍼하는 유족을 환자로 취급합니다.

2. 재난과 참사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

- 재난에 대한 대응 원칙을 바꿔야 합니다. 구조와 복구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방과 근절에 우선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에 대해 대비책을 만들고 시간과 재정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타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재난 안전 예방책을 세워야 합니다.
- 참사 책임자들의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안전을 소홀히 하는 생각을 아예 근절해야 합니다. 이

에 상응하는 권리와 통제권을 실무자들에게 주어 정치권력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실제 인적과실이 아니라도 사전적인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것도 처벌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 진실규명의 단초는 정보입니다. 안전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성역 없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 공기업,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재난 참사는 개인이 떠안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천명해야 합니다.

3. 이 모든 조사와 요구, 해결을 위하여 재난 안전을 위한 독립 기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존엄과 안전을 위한 인권 선언이 그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4.12.10.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진실은
나라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위해 행동
하겠습니다

진실에 대해 알 권리

- 진실을 밝힐 권리는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시카고 원칙 1

- 분쟁 후 정의에 관한 시카고 원칙
- Chicago principle on post-conflict justice(2001-2008)
- 제 2원칙 : 국가는 진실추구권(Right to Truth)을 존중하고 진실위원회 혹은 다른 기구를 통해 과거의 침해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권장해야 한다.

시카고 원칙 2

- 분쟁 후 정의에 관한 시카고 원칙
- Chicago principle on post-conflict justice(2001-2008)

- 제3원칙: 국가는 피해자들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고 정의를 향한 접근을 보장하며 보상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진실 규명이 참된 대책의 시작

-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의를 세우는 출발점이며 참된 대책의 시작입니다.
- 중대인권침해범 불처벌에 관한 주아네 보고서(1996)
- (유엔 인권위원회 차별 방지 및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 보고서)

불처벌에 관한 주아네 보고서

- "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모든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들에게 부여된 공통의 의무로서 불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들이 요구된다"
- 원칙1: 진실에 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 원칙2: 기억할 권리
- 원칙3: 희생자의 알 권리

진상규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 청와대는 205건의 자료를 요구받고 7건만 제출
- 청와대 증인채택 둘러싸고 논란 끝에 중단

감사원 감사

- 청와대 면책 : 청와대 단 1일 조사, 청와대 측 의견서 접수 후 '문제없다' 결론
- 국방부 실지조사 미실시

진상규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 구조 실패의 모든 책임이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있는 것으로 발표
- 낮은 직급만 기소 : 기소된 고위직 공직자는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 1급)이 유일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이
곧 진상규명의 진정한 시작

화학물질과 지역사회알권리



일과건강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 현 재 순**

구미 불산 사고

지역주민 보상금
380억2천만원



최종 집계된 불산
누출사고 피해 규모



인명 피해

주휴브글로벌 직원 5명 사망,
소방관 등 18명 부상,
주민 건강검진 1만2243건



재산 피해

농작물 고사(枯死) 212ha
(헥타르), 차량 부식 1958대
가축 피해 3943마리

자료: 국무총리실

불산누출사고 피해지역
절대 식용불가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최근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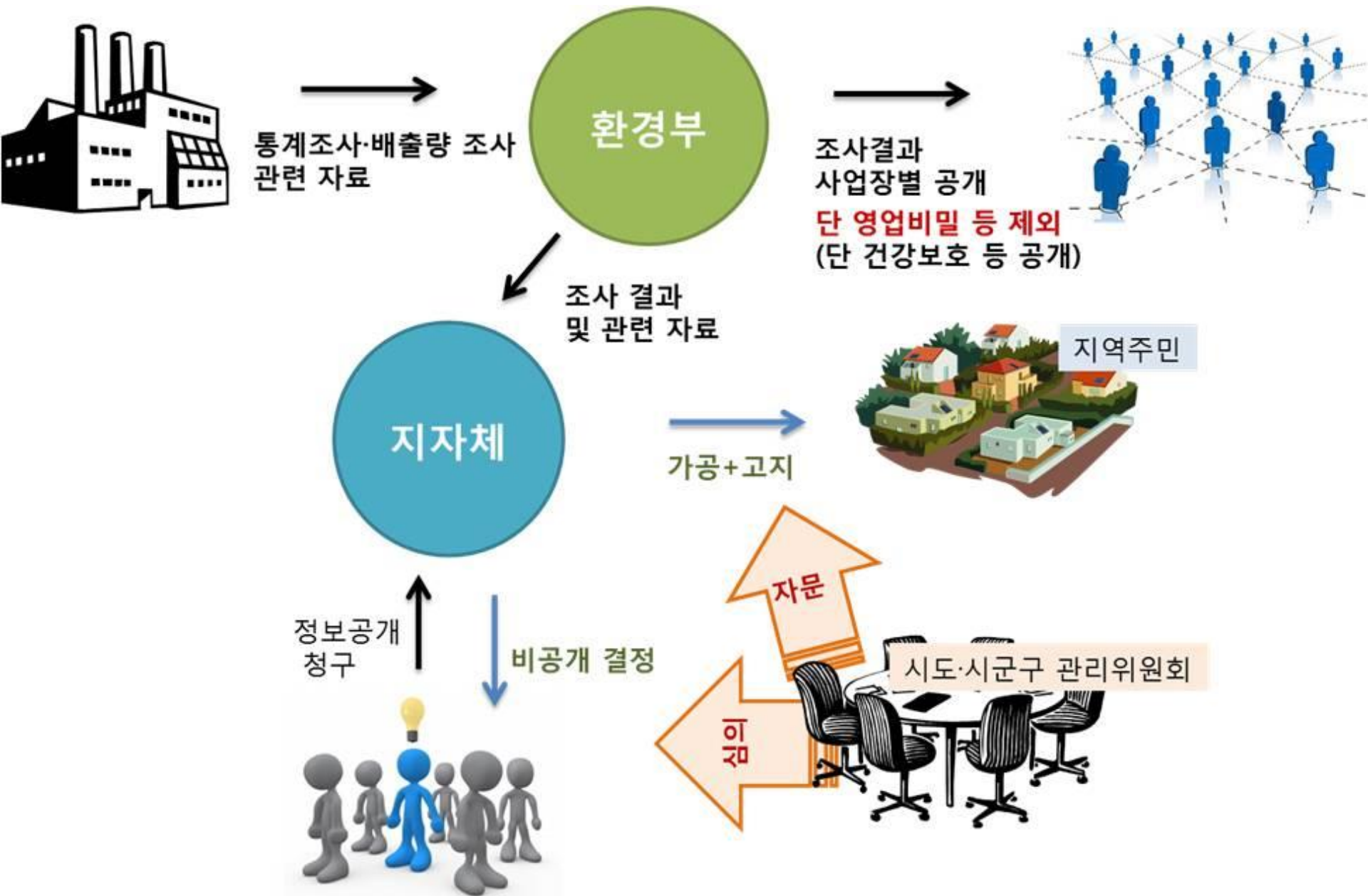
2013년
87건
평균 7배

2014년
8월까지
76건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대책의 핵심

-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별 관리체계-

- 집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어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가?
[내가 일하는 일터에는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가?
→ **작업환경에서의 알권리**
[내가 쓰고 있는 제품에는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가?
→ **생활환경에서의 알권리**
- 그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가?
- 사고 발생할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유해물질 노출을 회피하거나 줄일 수는 없는가?]



조사결과
 사업장별 공개
단 영업비밀 등 제외
 (단 건강보호 등 공개)

1. 지역운동

지역사회알권리 조례 제정하기

- 조례제정을 위한 추진본부 구성
 - 지역 각 참여단체 간 담회, 추진본부 발족
-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
 - 지역별 화학물질 배출, 사용량 정보공개
-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 전개
 - 선거인단 5% 주민발의 서명운동

2. 캠페인운동

물음표 도전 운동 참여하기



3. 모금운동

다음 희망해 후원하기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26개 단체 참여 <http://watch.safedu.org/>)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Since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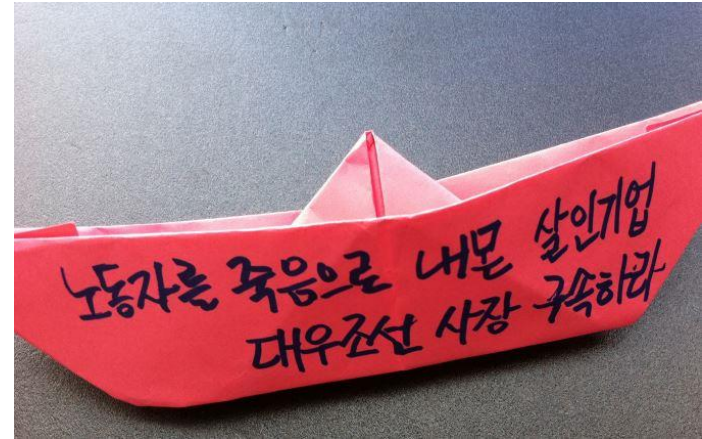
노동자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나.

인간적 마음의 자본주의가 가능한지는 모르
겠지만 상황을 개혁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야
한다.

-아오바 히루 / 국제공공노련



높은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사회적 범죄를 간과하면 안 된다. 어떤 노동자도 확률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겠지 하며 노동하면 안 되는 것이다.

호주는 현재 기업살인법을 시행 중이다
제라드 아이어스 / 호주건설산림광산에너지노조

도급, 아웃소싱, 비정규고용, 이직은 산재사 망률을 높인다. 위험관리가 파편화되고 경제적 자유만 기업에 주어진다. 규제당국 인력이 감축되고 노동자들은 점점 취약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

데이빗 월터 / 영국 카디프대 교수



정부는 기업을 형사처벌하고 노동자의 생명
과 공공안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업의
과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안드레아 퍼트 / 캐나다노총
캐나다도 현재 기업살인법을 시행 중이다



2014년 10월 17일, 국회 앞
월성원자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죽음에 대한 가족의 시위

역대 살인기업 : 그 해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를 낸 기업

년	기업 이름	
2014	건설업:대우건설	제조업: 현대제철
2013	건설업:한라건설	제조업: LG화학
2012	건설업: 현대건설	제조업: STX조선해양
2011	건설업: 대우건설	제조업: 대우조선해양
2010	건설업: GS건설	제조업: 대우조선해양
2009	코리아2000	
2008	한국타이어	
2007	현대건설	
2006	GS건설	

한국의 기업들은, 노동자를 작업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법적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선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이 가지는 힘은 사회적 상징,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호중 / 서강대 · 세월호국민대책위

노동건강연대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검색창에
노동건강연대를 치세요

<http://laborhealth.or.kr>

02-469-3976

우리는 행동한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유해위험 업무를
거부할/거절할 권리를”**

일하는 모든 이에게!

막을 수 있었던 참사!

-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하고, 실행될 때까지 승선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
- 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과 미비에 대해 항의하고 신고할 수 있었다면!!
- 승객을 포함하여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출항을 막을 수 있었다면!!!

 문제는 '안전불감증' 아니라, '권리불감증'!!!

당장의 '법벌이' 때문에 '법줄'을 끄는 상황을 거부할 수 없는

불산탱크 하부 밸브 수리작업 중 불산누출 발생일시: '13.01.28(월) 07:50

재
해
개
요

경기 화성시 소재 ○○전자(주) 화성사업장 1층 케미컬 공급장소에서 50% 불산 탱크 하부 밸브 누출 방지조치작업을 하던 작업자 5명이 누출된 불산에서 발생한 증기에 노출되어 1명 사망, 4명 부상한 재해



【 피해현황 】

☉ 사망 1명, 부상 4명(병원 후송 치료 후 퇴원)

【 재해발생원인 및 대책 】

- ☉ 유해물질 누출시 대피하지 않고 계속 작업하여 중독
- ☉ 불산취급시 보호장구 착용 미흡
 - 물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장화 착용 미흡
- ☉ 정비보수작업시 설비 가동정지, 안전조치 실시후 작업
- ➡ 관리대상 유해물질 누출시 신속한 대피 실시
- ➡ 취급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착용
- ➡ 정비작업시 설비가동 정지상태에서 작업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왜 대피하지 못했을까?

왜 적합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못했을까?

왜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만 했을까?

<제안 배경>

“작업중지권”을 살아숨쉬는 권리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징계, 손해배상

사문화된 권리



산재왕국, 중대재해 지속

복원해야 할 권리

〈제안 배경〉

작업중지, 작업거부, 작업거절권을 일하는 모든 이가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 콜센터 노동자가 고객응대 과정에서 통화를 종료할 권리
- 권력이 보도에 개입할 때 방송 노동자들이 제작을 거부할 권리
- 폭우, 폭설 등 기상 악화 속에서 배달과 택배 배송 등을 거부할 권리
 - 안전 규정을 어긴 세월호에 승선을 거부할 권리
 - 안전 규정을 어긴 세월호의 출항을 중단시킬 권리

**작업중지권
네트워크를
만들자**

**투쟁 사례의 공유
작업중지권 관련 실천 확산!
지지와 연대 구축!**

**법을
개정하자**

**작업중지권을 명문화된 권리로
더 적극적인 권리로!**

**작업거부
작업거절을
보편적 권리로!**

**인격권이 위협당할 때도
작업 거부/ 거절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행동 모색!**

〈행동과 참여 과제〉

함께 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 근절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팀”

서울: 02 - 324 - 8633

경기: 031 - 247 - 8633

Kilsh.or.kr



팬목항을 잊지말자

팬목항에 함께하기 위한 행동제안

팽목항을 잊지말자

이래서 제안합니다

팽목항은...



기다림의
공간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다”

수중수색이 중단되고, 범대본도 해체하고 팽목을 떠났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아홉명의 실종자들에 대한 가족들의 기다림이 계속됨.

진실의
공간

‘진실을 바다에 가둘 수 없습니다’

팽목항은 세월호 참사의 상징적 공간이자, 여전히 침몰의 진실이 갇혀 있는 공간.
진실을 영원히 팽목항 바다에 가둘 수 없다.

노란리본을 달고 애타게 기다리던 지난 봄의 약속을 잊지 말자

팽목항을 잊지말자

팽목항에 함께 하자

이것을 제안합니다

기다림과 진실의 버스

매주 토요일 <기다림과 진실의 버스>가 팽목항을 향합니다.

팽목항을 지키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팽목항 방파제에 서 실종자들을 기다리며 이름을 부릅니다.
세월호의 인양을 촉구하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길에 함께 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갖습니다.

팽목항 국민간담회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여전히 팽목항에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는 국민간담회를 이제 팽목항에서도 진행합니다. 매주 토요일 기다림과 진실의 버스 일정 이외에도, 모임별도 가능한 날 팽목항을 방문하시면, 팽목항에서 국민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세월호 인양촉구 국민청원

“인양포기론 소슬?”

실종자 수습과 침몰 진실규명을 위해, 세월호의 훼손없는 인양을 촉구합니다. 정부에 인양촉구 청원팩스보내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제안합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_ 기다림과 진실의 버스 팀

<http://jindo.sewolho416.org>

010-9667-0030

jindo416@gmail.com



<http://jindo.sewolho416.org>



<http://sewolho416.org>

팽목항을 잊지말자